

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5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대상포진 무료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대상포진 발병과 합병증을 예방하고, 노년층의 대상포진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평창군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평창군민으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1조)
- 나. 평창군 만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예방접종일 기준 평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군민으로 변경하여 무료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(안 제2조 1항)
- 나.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을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으므로 개선하고자 함(안 제2조 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별첨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별첨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:

- 1) 입법예고(2023.3.6.~2023.3.25.) 결과: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평창군 만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”을 “평창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평창군에”를 “예방접종일 기준 평창군에 1년 이상”으로, “만60세 이상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”을 “만 65세 이상 군민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”을 “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평창군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지원대상)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<u>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평창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2조(지원대상) ① -----</p> <p>----- <u>예방접종일 기준 평창군에 1년 이상</u> -----</p> <p>----- <u>만 65세 이상 군민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----- <u>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
관계법령

□ 지역보건법 제11조(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)

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6. 2. 3., 2019. 1. 15., 2019. 12. 3.>

1.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
2.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, 조사·연구 및 평가
3. 보건의료인 및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·관리·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·관리
4.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, 학교,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
5.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·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
 - 가. 국민건강증진·구강건강·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
 - 나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
 - 다.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·증진
 - 라. 여성·노인·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·증진
 - 마.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
 - 바.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
 - 사.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
 - 아. 난임의 예방 및 관리

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12. 3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9. 12. 3.>

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(건강증진과 의료제공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·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3. 18.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·요양 제도 등을 확립·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(임시예방접종)

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(이하 “임시예방접종”이라 한다)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8., 2020. 8. 11.>

1.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
2.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.

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4조에서 정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비용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조례안 제4조에서 정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백신비용 지원
 - 2023년부터 적용, 비용추계는 2023년 추경을 전제로 함

나. 추계 결과

(단위:명, 천원)

구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계
지원인원	600	6,000	3,000	1,000	1,000	11,600
소요예산	60,000	600,000	300,000	100,000	100,000	1,160,000

- 산출내역: 11,600명×100,000원=1,160,000천원

다. 재원조달 방안

-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조달

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장 손영미
연락처	(033) 330 - 4887